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 차입한도액
합 계	1,521,507,661	45,645,230
일반회계	1,191,527,876	35,745,836
특별회계	329,979,785	9,899,394
공기업특별회계	110,141,154	3,304,23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099,928	1,622,9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041,226	1,681,237
기타특별회계	219,838,631	6,595,159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4,991,105	1,049,7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0,606	187,518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18,410	54,552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	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9,663,064	4,789,892
주택사업특별회계	2,849,870	85,4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700	45,021
기반시설특별회계	1,318,800	39,564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31,756	953
주차장특별회계	11,414,287	342,429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8,440,64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4,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이 정해진 외부기관 전입금 등은 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